

法律(消費者)聯盟

WWW. GOODLAW.ORG

金大仁(법정치포럼 이사장) 魯香基(전 한국기자협회장) 申平(로스쿨교수, 前법관) 嚴虎聲(변호사, 前국회의원) 李子賢(장계협 상임대표) 趙柄倫(교수 前헌법학회장) 趙泰任(한국부인회 총회장)

(우) 08786 서울시 관악구 석고개로 87, 6층 전화. 02) 523.8760~7 E.MAIL: GOODLAW@GOODLAW.ORG

= 윤리특위 **정상화**를 위해 윤리특위 **구성원부터** 초재선보다 **여/야당 종진의원이** 나서야 =

패스트트랙 고소·고발에도, 윤리특위는 **구성조차** 안해
제20대 국회, **징계처리 사실상 '0' 건** . 막장(?) 국회 조장
국회의원 징계안 42건(접수는 47건)중 1건도 징계처리 안한 채 자동 폐기될 판

== 법률연맹, 제20대 국회 4개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 분석 발표 ==

- **징계안 폭주에도** 윤리위 회의는 4년 동안 고작 9회 총 2시간 52분에 불과
- 오히려, 제20대 국회 전반기까지의 **상설특위에서 비상설 특위로** 전락
- 민간인사 참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019. 1. 23.에 구성
- 4차 년도에 **구성도 안된** 윤리특위에 . 4건 징계안 접수(현재 42건 계류 중)

1. 제20대 국회 4개년 윤리특위 : 국회 자정기능은 상실코 형사 고소 고발전

입법/사법감시 법률전문 NGO/NPO인 법률연맹 총본부(총재 김대인)는 국회법 제46조1)에 의해 설치되어 국회의 자정기능을 하기위해 존재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제20대 국회(2016.5.30.~2019.12.31.)**전체회의와 소위원회의** 회의내역 등을 발표했다.

2. 제20대 국회 4년동안의 윤리특별위원회의 회의현황을 살펴보면

(1) 제20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차년도**에 5회 1시간 15분과 **2차년도**에 2회 9분, **3차년도**에 2회 1시간 28분 회의를 한 것이 전부였고, **소위원회는** 구성되었으나 **4년동안 단 5차례** 회의를 하였다.

《제20대 국회의 윤리특별위원회 회의횟수 및 시간》

구분 (위원장)	회의횟수	회의시간	의원 출석률	소위 회의
1차년도 (백재현)	5회	1시간 15분	93.33%	4
2차년도 (유승희)	2회	9분	80.00%	1
3차년도 (박명재)	2회	1시간 28분	100%	0

- 1) **국회법** 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8. 7. 17.>
-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⑥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7. 17.>[전문개정 2018. 4. 17.]

4차년도 (없 음)	0	0		0
전체	9회	2시간 52분	91.11%	5회

(2) 윤리특별위원회가 3차년도부터 비상설 소위원회로 되어 6개월마다 구성 연장을 하는 데, 4차년도에는 연장이 안되고, 구성 자체가 되지 않았다.

(3) 윤리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인 42건을 살펴 보면, 이해찬, 나경원, 심재철, 홍영표 의원 등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전·현직 당대표, 원내대표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 윤리특별위가 가동되더라도 징계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4) 제20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자격심사안은 1건도 접수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 징계안은 47건이 접수되었고, 이중 2건은 심사대상제외 처리되고, 3건은 징계안 철회되었다.

《심사대상 제외 및 철회 국회의원 징계안 현황》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2003934	국회의원(조원진) 징계안(심재권의원)	2016.11.29.	2019.03.08.	심사대상제외
2003933	국회의원(김도읍) 징계안(심재권의원)	2016.11.29.	2019.03.08.	심사대상제외
2002486	국회의원(정세균) 징계안(정진석의원 외 128인)	2016.09.27.	2016.12.28.	철회
2000869	국회의원(이장우) 징계안(김동철의원 등 30인)	2016.07.14.	2016.09.08.	철회
2000712	국회의원(김동철) 징계안(이장우의원 등 23인)	2016.07.06.	2016.09.08.	철회

(5) 심사할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도 않은 4차년도에도 국회의원 징계안은 4개나 접수되었다.

《제20대 국회 4차년도에 접수된 국회의원 징계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구분	제안일자
2022864	국회의원(김상희) 징계안(김승희의원 외 20인)	의원	2019.10.11.
2022863	국회의원(기동민) 징계안(김승희의원 외 20인)	의원	2019.10.11.
2022852	국회의원(김승희) 징계안(기동민의원 등 20인)	의원	2019.10.08.
2022851	국회의원(여상규) 징계안(김영호의원 등 20인)	의원	2019.10.08.

3. 이번 조사를 총괄한 김대인 법률연맹 총재는 “윤리특별위원회는 국회 스스로 자정기능을 위해 설치한 위원회로 모든 위원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고 강조하면서, “그런데 징계심사는커녕 위원회구성도 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의무해태” 라고 질타하며, “5천만 국민의 최고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의 윤리적 자정기능을 책임질 윤리특위에서 의원의 징계사안 등을 추상같이 심사/처리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하 2.10쪽까지의 목차》

4. 제20대 국회 윤리특별위원 “연도별 현황과 윤리관련 법규” 3~10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전화. 02) 523.8760~7 goodlaw@goodlaw.org 《문의 : 홍 금 애 실장 / 윤 소 라 부장》

4. 제20 대국회 4년 동안의 윤리특별위원회의 연도별 현황 분석

(1) 총괄

제20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을 살펴보면 20대 국회 3차년도에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전락한 뒤 4차년도에는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대 국회의 윤리특위의 활동을 보면, 대부분 임기말 폐기되는 절차를 밟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제18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징계안이 접수되었고, 의원 징계안 중 1건이 처리되었다. (강용석 의원 징계안)

제17대 국회에서는 윤리심사안 중에서 2건이 가결되었는데, 최연희 의원과곽성문 의원의 윤리심사안이 원안가결되었다.

《역대 국회의 윤리특위 활동실적》

국회	구분	접수	처리	임기말 폐기	처리내용		
					원안가결	폐기	철회
16대 국회	의원징계안	13	3	10		3	
	윤리심사안	3	3	0		3	
17대국회	의원징계안	37	12	25	0	7	5
	윤리심사안	19	8	11	2	5	1
18대국회	의원징계안	57	27	30	1	7	19
	윤리심사안	2		2			
제19대 국회	의원징계안	39	6	33			6
	의원자격심사안	2	0	2			
제20대국회	의원징계안	47	처리5(2건은 심사대상제외)				3

* 의원 윤리심사 : 의원윤리심사제도는 제13대국회 국회법 개정(1991. 5. 31.)으로 도입되었으나 제14대국회까지는 윤리심사요구가 없었고, 제18대국회 국회법 개정(2010. 5. 28.)으로 폐지되었음.

제20대 국회에 접수되어 현재 계류된 건수는 42건이다.

《제20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국회의원 징계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
2022864	국회의원(김상희) 징계안(김승희의원 외 20인)	2019.10.11
2022863	국회의원(기동민) 징계안(김승희의원 외 20인)	2019.10.11
2022852	국회의원(김승희) 징계안(기동민의원 등 20인)	2019.10.08
2022851	국회의원(여상규) 징계안(김영호의원 등 20인)	2019.10.08
2020678	국회의원(강효상) 징계안(표창원의원 등 20인)	2019.05.29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
2020491	국회의원(나경원) 징계안(백혜련의원 등 20인)	2019.05.17
2019940	국회의원(박광온) 징계안(정양석의원 등 114인)	2019.04.22
2019194	국회의원(홍영표) 징계안(정양석의원 등 113인)	2019.03.13
2019193	국회의원(이해찬) 징계안(정양석의원 등 113인)	2019.03.13
2019168	국회의원(나경원) 징계안(윤호중의원 등 128인)	2019.03.13
2019020	국회의원(홍익표) 징계안(김관영의원 등 26인)	2019.03.07
2018908	국회의원(장제원) 징계안(이철희의원 등 20인)	2019.02.28
2018907	국회의원(이학재) 징계안(이철희의원 등 20인)	2019.02.28
2018906	국회의원(이장우) 징계안(이철희의원 등 20인)	2019.02.28
2018904	국회의원(윤영석) 징계안(이철희의원 등 20인)	2019.02.28
2018903	국회의원(송언석) 징계안(이철희의원 등 20인)	2019.02.28
2018701	국회의원(이수혁) 징계안(김정재의원 등 20인)	2019.02.19
2018700	국회의원(김정우) 징계안(송희경의원 등 20인)	2019.02.19
2018578	국회의원(이종명) 징계안(이철희의원 등 4인 외 171인)	2019.02.12
2018577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이철희의원 등 4인 외 171인)	2019.02.12
2018576	국회의원(김순례) 징계안(이철희의원 등 4인 외 171인)	2019.02.12
2018511	국회의원(최교일) 징계안(백혜련의원 등 20인)	2019.02.07
2018421	국회의원(김석기) 징계안(박주민의원 등 24인)	2019.01.30
2018271	국회의원(서영교) 징계안(김승희의원 등 22인)	2019.01.21
2018225	국회의원(손혜원) 징계안(신보라의의원 등 20인)	2019.01.17
2015777	국회의원(심재철) 징계안(김정우의원 등 23인)	2018.09.28
2013389	국회의원(조원진) 징계안(박홍근의원 등 20인)	2018.05.02
2011456	국회의원(유의동) 징계안(이춘석의원 등 20인)	2018.01.18
2009519	국회의원(곽상도) 징계안(우원식의원 외 109인)	2017.09.21
2009425	국회의원(표창원) 징계안(정우택의원 외 104인)	2017.09.15
2009422	국회의원(이재정) 징계안(정우택의원 외 104인)	2017.09.15
2009420	국회의원(손혜원) 징계안(정우택의원 외 104인)	2017.09.15
2009419	국회의원(소병훈) 징계안(정우택의원 외 104인)	2017.09.15
2009418	국회의원(박주민) 징계안(정우택의원 외 104인)	2017.09.15
2009417	국회의원(김현권) 징계안(정우택의원 외 104인)	2017.09.15
2009415	국회의원(김한정) 징계안(정우택의원 외 104인)	2017.09.15
2005263	국회의원(표창원) 징계안(김정재의원 등 90인)	2017.01.24
2002807	국회의원(김민기) 징계안(염동열의원 등 20인)	2016.10.21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
2002643	국회의원(한선교) 징계안(우상호의원 등 4인 외 154인)	2016.10.14
2002620	국회의원(박지원) 징계안(이양수의의원 등 90인)	2016.10.11
2002610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박지원의원 등 3인 외 163인)	2016.10.10
2002210	국회의원(한선교) 징계안(우상호의원 등 3인 외 159인)	2016.09.07

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2020. 2. 12. 23:18 방문)

(2) 제20대 국회 제 1차년도 국회윤리 특별위원회 활동

제20대 국회 1차년도 국회의원 징계안 처리 사실상 '0' 건

감싸주기는 여전, 징계안 계류 8건

제20대 국회 1차년도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백재현, 간사 김기선, 전해숙, 오세정)는 4회기(국회) 동안 5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시간은 총 1시간 15분으로 매우 저조하였고, 의원의 출석률은 첫날 윤리특위 간사선임 및 소위 구성할 때에만 15명의 소속위원이 모두 출석하여 출석률 100%를 기록하였고, 5회 회의 평균 93.33%였다. 제20대 국회 제1차년도 윤리특별위원회의 특이점은 국회윤리제도개선위원회(소위원장 원혜영)를 운영하여, 4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한 것이었으나, 아직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8인으로 구성된 징계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기선)는 열리지 않았고, 제19대 1차년도에는 자격심사안이 많이 들어왔으나, 제20대 국회에는 한 건도 없어서 8인으로 구성된 자격심사소위원회(위원장 전해숙)도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하였다.

《제20대 국회 1차년도 윤리특별위원회 회의현황》

국회	차수 일자	개회	산회	안건	출석의원
제343회(2016.06.07.~2016.07.06.)	제1차 (2016년07월04일)	09:02	09:19	간사선임의 건	15/15
	제2차 (2016년07월06일)	09:33	09:35	소위원회 구성의 건	14/15
제344회(2016.07.19.~2016.07.27.)	제1차 (2016년07월20일)	09:03	09:11	국회윤리제도 개선 소위원회 구성의 건	13/15
제347회(2016.12.12.~2016.12.31.)	제1차 (2016년12월29일)	14:26	14:43	징계안(비공개)심사	13/15
제349회(2017.02.01.~2017.03.02.)	제1차 (2017년03월02일)	13:19	13:50	징계안(비공개) 심사	15/15
계/평균	회의시간	1시간 15분		평균출석률	93.33%

제20대 국회 1차년도에 처리된 징계안은 2건으로 모두 발의자가 철회를 한 경우여서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철회동의권만 행사해서 사실상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처리된 것은 한 건도 없었다.

〈제20대 국회 1차년도에 철회된 국회의원 징계안〉

의안번호	의안명	의결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2002486	국회의원(정세균) 징계안(정진석의원 외 128인)	2016.09.27	2016.12.28	철회
2000869	국회의원(이장우) 징계안(김동철의원 등 30인)	2016.07.14	2016.09.08	철회

(3) 제20대 국회 제 2차년도 국회윤리 특별위원회 활동 전체회의 9분,

소위원회 회의 42분 징계 0건 처리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전임 백재현 위원장이 2017. 5. 29. 사임하여 2017년9월28일 제354회 정기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위원장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 유승희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총 투표수 259표 중 194표를 얻음).

위원회 구성을 보면, 유승희 위원장(3선)과 원혜영 의원(5선), 김기선 의원(재선)을 제외하고는 모두 초선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제20대 국회 2차년도 윤리특별위원회 구성현황》 2018. 5. 28. 현재

정당	위원장	간사	위원	위원수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김영진	박재호 백혜련 원혜영 전재수	6
자유한국당		김기선	곽상도 金成泰 이종명 전희경 정용기	6
바른미래당		오세정	김삼화	2
민중당			김종훈	1

제20대국회 제2차년도 윤리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는 2회에 걸쳐서 고작 9분 회의를 하였으며, 국회윤리제도개선소위원회는 354회 정기국회에서 1차 42분간 회의를 하였다.

전체회의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간사선임, 소위원회 구성 등이 이루어졌으며, 계류된 징계안에 대한 심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20대 국회 제2차년도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소위 회의현황》

일자	국회 차수	개회	산회	안건	출석/정원
2017. 12.07.(목)	제354회 정기회 제1차전체회의	13:32	13:39	1.간사 선임의 건 2.소위원회 위원 개선 건 3.자격심사소위원장 선출 건	11/15
2018. 03.05.(월)	제357회 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12:02	12:04	1. 간사 선임의 건 . 오세정 위원(바른미래당)	13/15
2017. 11.20.(월)	제354회 정기회 제1차국회윤리제도개 선소위원회	10:09	10:51	1. 윤리제도 개선 관련「국회법 개정안」성안의 건	5/5

국회윤리특별위원회는 2016년에 접수된 징계안을 비롯하여 무려 18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계류되어 있었으나, 한 건도 심사도 처리도 하지 못하였다.

(4) 제20대 국회 제3차년도 국회윤리 특별위원회 활동

전반기 상설과 달리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전략

1년동안 2차례 1시간 28분 회의. 3개 소위는 1번도 회의안해

민간인사 참여 윤리자문위원회는 2019. 1. 23.에야 구성

징계안 처리 사실상 0건(심사대상 제외 2건만 처리)

제3차년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전반기 상설특별위원회에서, 설치여부에 대해 국회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비상설특별위원회를 전략하였다.

2018년 10월 18일 18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첫 회의는 2018년 11월 15일에야 하여 위원장과 간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차 회의는 2019년 3월 7일에 있었고, 징계안 21개를 상정하였으나, 처리된 것은 없었다. 회의시간은 총 1시간 28분이었고, 징계심사는 인사사항으로 대부분 비공개 회의로 진행되었다.

제3차년도 중 징계안 접수는 2018. 9. 22. 국가재정정보시스템 무단열람 공방으로 정부로부터 고발까지 받은 심재철 의원 징계안, 전라남도 목포시 문화재거리 부동산매입 의혹 관련 손혜원 의원 징계안 등 22건이 새로 제출되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나경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징계 청구되었다.

3차년도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국회의원 징계안은 총 43건(2019. 5. 29. 기준)이었으며, 이중 3건은 철회되었고, 2건은 심사대상 제외 되어 현재 38건이 미처리되

어 있다. 윤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것은 18건이었다.

3차년도에 징계처리된 안건은 0건이며, 심사대상 제외로 처리된 것은 2건이었다. 의원 징계는 심사 전에 국회법에 따라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원 8명 중에서 4명이 장기간 공석 중이어서 안건 처리를 진행하지 못했고 공석 중인 자문위원의 위촉을 촉구하여 2019년 1월 23일 비로소 구성을 완료하였다.

《20대 국회 3차년도 처리 징계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2003934	국회의원(조원진) 징계안(심재권의원)	2016.11.29	2019.03.08	심사대상제외
2003933	국회의원(김도읍) 징계안(심재권의원)	2016.11.29	2019.03.08	심사대상제외

(5) 제20대 국회 제 4차년도 국회윤리 특별위원회 활동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 통계자료가 없어 조사/분석 불가함.

국회의원 윤리강령 [제정 1991.02.07.]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은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민주정치의 발전과 국민민복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국회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3.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숭상수범한다.**
4. 우리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에 정치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정치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5. 우리는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국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

〈참고자료〉 윤리특별위원회 관련 국회법 조문

국회법 제46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8. 7. 17.>

② 삭제 <2018. 7. 17.>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특별위

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8. 7. 17.>

⑤ 삭제 <2018. 7. 17.>

⑥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7. 17.>

[전문개정 2018. 4. 17.]

국회법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와 관련된 의장의 자문과 의원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③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른다. 이 경우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는 그 밖의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자문위원 수와 같아야 한다.

④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자문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의원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의 자격, 임기 및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1. 헌법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제29조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제29조의2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4.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5. 제102조를 위반하여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거나 이 법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의사진행을 현저히 방해하였을 때

6. 제1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게재되지 아니한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전제 또는 복사하게 하였을 때

7. 제11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표 금지 내용을 공표하였을 때

8. 제145조제1항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9. 제146조를 위반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였을 때

10. 제148조의2를 위반하여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제145조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11. 제148조의3을 위반하여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12.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 집회일 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

13. 탄핵소추사건을 조사할 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1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15.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할 때

16. 「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였을 때

[전문개정 2018. 4. 17.]

제156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제1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위원장은 소속 위원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며,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의원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징계대상자로부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징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⑥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5명 이상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할 수 있다.

⑦ 제155조제10호에 해당하여 징계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의장은 제1항, 제2항,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여 지체 없이 의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제157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① 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제155조제10호에 해당하여 요구되는 징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요구를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여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징계 요구를 회부할 수 없을 때에는 제46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하고 3일 이내에 징계 요구를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7.>

1. 제156조제1항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2. 제156조제2항의 경우: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3. 제156조제5항의 경우: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
- ② 제156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징계 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그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 국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4. 17.]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일부개정 2017.03.02 국회규칙 제200호]

제1조(윤리강령준수)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품위유지)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청렴의무)

국회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직권남용금지)

- ①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 ②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직무관련 금품등 취득금지)

국회의원은 법률안 기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국가기밀의 누설금지)

국회의원은 직무상 지득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사례금)

국회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

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8조(겸직금지등)

-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은 법률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에서 보수를 받는 임·직원의 직을 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겸직신고)

국회의원은 보수를 받고 있는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기업체 또는 단체의 명칭과 임무등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피의무)

국회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재산신고)

국회의원은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기부행위의 금지등)

- ① 국회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등에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서는 아니된다.
- ② 국회의원은 경조사 및 지역구 행사등에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된다.
- ③ 국회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등에 연하장, 달력 기타 선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의정활동보고를 겸한 인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국외활동)

- ① 국회의원은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국회의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의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회의출석)

- ① 국회의원은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식해외출장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의 각종 회의에 성실히 출석하여야 한다.
- ② 국회의원은 결혼식 주례나 지역구 활동등을 이유로 국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보좌직원의 임용 및 관리)

- ①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좌직원으로 임용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③ 국회의원은 그 보좌직원을 성실하게 지휘·감독하여야 하며, 국회가 그 보좌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국회의원 사무실의 운영경비 또는 보좌하는 국회의원의 후원금 등 여하한 명목으로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끝>